

# (가칭)한투부동산신탁회사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

의안 번호	6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고갈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실패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신규 사업에 대하여 자체사업, 리츠, 신탁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되 고위험 사업이나 일부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은 리츠나 신탁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나. 공사가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부동산신탁을 통해 확대하고, 도시규제완화 및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- 다. 이에 금융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 예비인가를 취득한 (가칭)한투부동산신탁(주)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대상 기관

- 1) 기관명칭: (가칭)한투부동산신탁(주) - 금융위원회 예비인가
- 2) 출자금액: 500억 원(2019년) → 2,000억 원(2021년)
- 3)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금액: 49.5억 원 → 198억 원(9.9%)

## 나. 주요사업

- 1) 부동산신탁과 핀테크·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
- 2) 2030세대에 대한 사업 확대
- 3) 서울(SH)형 도시재생사업
  - 가)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)
  - 나)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(소규모 정비사업 등)
  - 다) 기존주택 매입(건설사업자에 대한 담보신탁)
  - 라) 역세권 청년주택(토지신탁 등)
  - 마) 국공유지 신탁개발사업 등
- 4)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
  - 가) 도시규제완화 및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사업(토지신탁 등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부동산신탁회사 출자사업 시행(안) -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방침

※ 작성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발금융처

(부장 남상국 ☎ 3410-7099 / 담당 최광석 ☎ 3410-7105)